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實用新案登錄無効

〈大法院 第1部 判決〉(1983. 5. 10)

裁判長: 大法院判事 이 일 규

關與法官: 大法院判事 이 성 렬·진 상 석·이 회 창

1. 審判請求人(上告人): 世奉實業(株)(서울 중로구 장사동 46)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裕統防振(株)(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22-1)
3. 原審決: 特許廳 抗告審判所 1982. 12. 30 告知 1981年 抗告審判(당) 第181號 審決
4. 主 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上告理由를 본다.

1. 改正前의 舊實用新案法(1976. 12. 31 法律 第2957號) 第5條 第1項 第2號는 實用新案登錄前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의 種類에 대하여는 이를 大統領令이 定하도록 委任에 따라 의용 實用新案法施行令(1978. 7. 26 大統領令 第9101號)은 그 第2條에 外國에서 頒布된 刊行物의 種類를 條約, 協定 또는 法律에 의하여 우리 國民에게 自國에의 住所나 營業所의 有無에 不拘하고 實用新案登錄에 관한 權利를 許容하는 國家에서 頒布된 (1) 政府가 發行한 刊行物 (2) 教育機關이 發行한 刊行物 (3) 公共研究機關이 發行한 刊行物 (4) 公認學術團體가 發行한 刊行物 또는 研究發表文 (5) 國際機構가 發行한 刊行物 (6) 第1號 내지 第5號 이외의 定期刊行物 또는 個人的 著書 등으로 定하고 있으므로 原審의 引用證據인 갑 제3호증은 日本國 소화전선전 람주식회사가 發行한 카다록으로 이는 위 實用新案法施行令 第2條第1號 내지 第5號에 規定된 刊行物 또는 研究發表文이라 할수 없고 같은 第6號에 規定된 定期刊行物 또는 個人的 著書라고도 할수 없어 이 갑 제3호증이 이 事件考案出願前에 國內에서 頒布되어 公知公用되었다고 認定

할만한 資料가 없다고 하여 原告의 請求를 陪席한 措置는 正當하고 카다록이라 할지라도 個人的 著書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前提로한 所論論旨는 그 獨自의 見解에 지나지 않아 原審에 法理誤解의 違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一 參 考

抗告審判

1981年 抗告審判(당) 第181號

抗告審判請求人: 裕統防振(株)

被抗告審判請求人: 世奉實業(株)

主文: 原審決을 破棄한다.

本件 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審判 및 抗告審判費用은 被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審 判

1981年 審判第19號

審判請求人: 世奉實業(株)

被審判請求人: 裕統防振(株)

主文: 本件 登錄 第17303號 實用新案은 이를 無效로 한다.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